

## 『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』 상품설명서

심의번호 : 준법감시담당관 2024-6(심의일 : 2024.1.29.)

이 설명서는 우체국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『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 특약』, 『거치식 예금 약관』, 『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』이 적용됩니다. 이 예금은 전문(電文)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## 1. 상품개요 및 특징

- 상품명 : 우체국 퇴직연금정기예금
- 상품특징 :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

## 2. 상품내용

- 이자율 등 아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약정 전 제공되는 자료로 **실제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**

(2024.01.31. 현재, 세전)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			
예금종류	거치식 예금																					
가입대상	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																					
가입기간	◎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 ◎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: 3년																					
가입금액	제한없음																					
적용이자율	신규 가입일(재예치일) 현재 「퇴직연금정기예금」 가입기간별 기본이자율																					
만기이자 계산방법 (산출근거)	가입(재예치)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 [이자계산 산식] 원금 × 약정이율 × 예치일수/365																					
중도해지이자율	신규 가입일(재예치일) 당시 게시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																					
	<table><thead>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적용이율</th><th>비고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개월 미만</td><td>0.10%</td><td></td></tr><tr><td>1개월 이상 3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5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<td>최저금리 0.15%</td></tr><tr><td>3개월 이상 6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<td>최저금리 0.15%</td></tr><tr><td>6개월 이상 9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<td>최저금리 0.20%</td></tr><tr><td>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</td><td>기본이율 × 8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<td>최저금리 0.20%</td></tr><tr><td>12개월 이상</td><td>기본이율 × 9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</td><td>최저금리 0.25%</td></tr></tbody></table>	예치기간	적용이율	비고	1개월 미만	0.10%	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5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15%	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15%	6개월 이상 9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20%	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8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20%	12개월 이상	기본이율 × 9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25%
	예치기간	적용이율	비고																			
	1개월 미만	0.10%																				
	1개월 이상 3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5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15%																			
	3개월 이상 6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6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15%																			
	6개월 이상 9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7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20%																			
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	기본이율 × 8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20%																				
12개월 이상	기본이율 × 90% × 경과월수/계약월수	최저금리 0.25%																				
1) 기본이율 : 신규가입일(재예치) 당시 정기예금 기본금리(추가금리 제외)																						
2) 경과월수 :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, 월 미만 일수는 버림																						
3) 계약월수 : 계약기간이 월 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(월 미만 일 수는 버림)																						
※ 중도해지이자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(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내용												
<p>중도해지이자율</p>													
<p>중도해지이자 계산방법 (산출근거)</p>	<p>가입(재예치)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          [이자계산 산식] 원금 X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X 예치일수/365</p>												
<p>특별중도해지</p>	<p>◎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</li> <li>-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</li> <li>·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 (단,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)하는 경우</li> <li>·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하는 경우</li> <li>·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·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고시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</li> </ul> </li> <li>-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</li> <li>-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</li> <li>-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</li> <li>-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</li> <li>- 수탁자의 사임</li> <li>- 계열사내 전직,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통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</li> <li>-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</li> <li>-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</li> <li>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영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사유</li> </ul> <p>◎ 이자율 : 신규일(재예치일) 당시 게시된 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자율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예치기간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특별중도해지 이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개월 미만</td> <td>3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</td> </tr> <tr> <td>6~12개월 미만</td> <td>6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</td> </tr> <tr> <td>1~2년 미만</td> <td>1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</td> </tr> <tr> <td>2~3년 미만</td> <td>2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</td> </tr> <tr> <td>3년 이상</td> <td>3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예치기간	특별중도해지 이율	6개월 미만	3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6~12개월 미만	6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1~2년 미만	1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2~3년 미만	2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3년 이상	3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
예치기간	특별중도해지 이율												
6개월 미만	3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											
6~12개월 미만	6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											
1~2년 미만	1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											
2~3년 미만	2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											
3년 이상	3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자율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특별중도해지	<p>※ 단, 「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」 및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 및 제13조의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사유」에 의한 해지인 경우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약정이자율 적용</p>
이자지급방식	만기일시지급식
만기처리방법	<p>◎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(DB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</li> <li>- 자동 재예치 계약조건은 약정이자율을 제외하고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예치</li> <li>- 자동 재예치 금액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원리금이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</li> <li>- 자동 재예치 적용이율은 매 재예치 시점 기간별 고시이율을 적용</li> </ul> <p>◎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(DC), IRP형 퇴직연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</li> <li>-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</li> </ul>
분할해지	<p>◎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단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(DC)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(근로자)별로 만기해지 포함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</li> </ul> <p>◎ 분할해지 횟수에 산정되지 않는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</li> <li>-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</li> <li>-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</li> </ul> <p>◎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의한 분할해지 시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특별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며 그 외 사유인 경우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</p>
예금자보호	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,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
기타사항	<p>◎ 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도·양수불가</p> <p>◎ 이 예금은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 전문(電文)을 통해 가입·해지 등의 거래 가능</p>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<p>▪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</p> <p>※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</p>

구 분	내 용
휴면예금 및 국고귀속	<p>‘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’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국고귀속된 휴면예금을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우체국 휴면예금은 우체국예금 홈페이지(<a href="http://www.epostbank.go.kr">www.epostbank.go.kr</a>), 우체국스마트뱅킹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</p>
자료열람요구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체신관서가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체신관서는 법령,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, 영업 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위법계약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고시 제32조에 따른 위법계약의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)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▪ 체신관서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</li> </ul>

### 3. 유의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고시」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.
- 이 예금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계약 체결 후 가입이 가능하며,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우체국에 한해 취급하는 상품입니다.
- 이 예금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상품으로 전문(電文)을 통해 가입·해지 등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.
- 만기 전 이 예금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.
- 약정지급이자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될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합니다.
- 상품 가입 시에는 가입일 현재 우체국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상품 내용을 적용하며, 이자율·서비스 등의 상품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이 상품에 대하여 체신관서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우체국예금·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이 예금은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과에서 개발한 예금상품입니다.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우체국금융고객센터(1599-1900, 1588-1900), 인터넷홈페이지([www.epostbank.go.kr](http://www.epostbank.go.kr))에 문의할 수 있고, 과학기술정보통신부([www.msit.go.kr](http://www.msit.go.kr)) 또는 국민신문고([www.epeople.go.kr](http://www.epeople.go.kr))에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< 부록 >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 어	설 명
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총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.</li> </ul>
가압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.</li> </ul>
질권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 됩니다.</li> </ul>
경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남</li> <li>* (예시) 만기일 경과 → 만기일이 지남 / 3개월 경과 : 3개월이 지남</li> </ul>
양도 · 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권리나 재산,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. 또는 그런 일로 넘겨주는 일을 ‘양도’, 넘겨받는 일을 ‘양수’ 라고 합니다.</li> </ul>
휴면예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휴면예금이라고 합니다.</li> </ul>